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485

2019년 4월 19일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2일, 박기재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19년 4월 19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박기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2018년 '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'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라시, 자치구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의 회의실 및 실내행사에서 1회용 컵 및접시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, 올해는 민간위탁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.

이에 따라 공무원 및 서울시민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었으나, 다회용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

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4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가. 개요

 본 조례안은 1회용 컵이나 접시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며, 다회용품 관리 부주위로 대두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○ 안 제4조의4제1항은 서울시, 서울시 설립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「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1)」에 부합하는 것임.

〈1회용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목표〉

구 분	2017년	2020년	2022년
1회용 플라스틱 감축률	2015년 기준	30%	50%
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	48%	60%	70%

○ 안 제4조의4제2항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세척·살균을 위한 기구 등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실내행사를 빈번하게 주관하는 부서 등에 한하여 필요시 다회용품 세척·살균 등 위생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회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직원의 업무량 경감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¹⁾ 자원순환과-15553('18.9.21)

- 5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없 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자원의 절약 등)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"산하기관 등"이라 한다)에서 다회용품(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용을 촉진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·살균하기 위한 기구·장비·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